

환경성적표지제도 소개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in Korea



김형석 Hyungseok Kim
트레스웍스
이사
E-mail : hskim@tres.kr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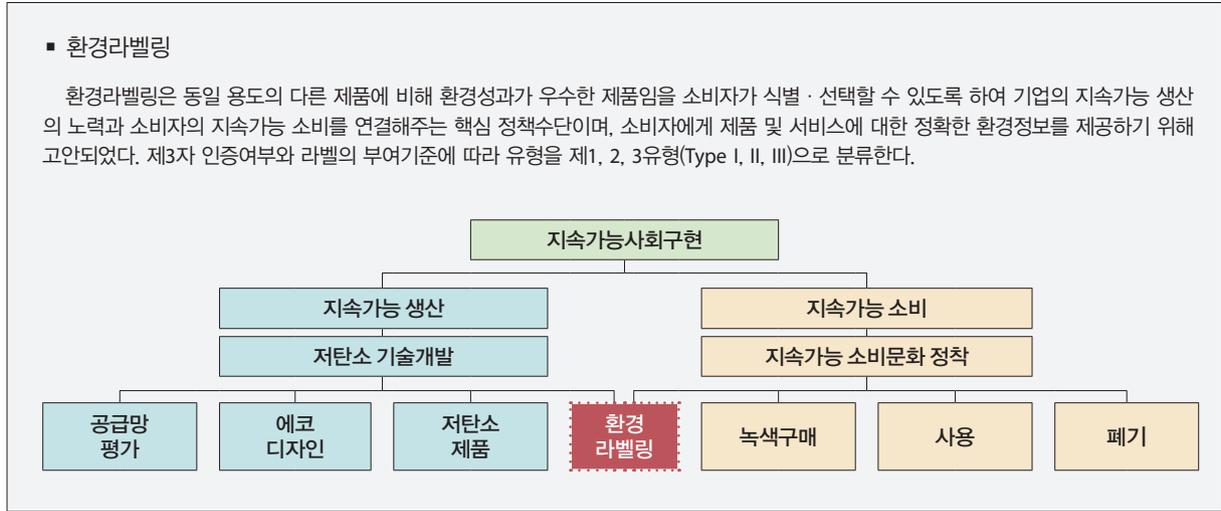
환경성적표지제도(이하 “제도”)는 국제표준 ISO 14025(Environmental labels and declarations-Type III environmental declarations-Principles and procedures)에 근거하여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환경라벨링 제도이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환경라벨링제도를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환경성적표지제도는 제3유형(Type III)에 해당된다. 환경성적은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한다.

< 환경라벨링 유형 >

구분	Type I	Type II	Type III
명칭	환경라벨	자체 환경성선언	제품 환경성선언
내용	제품의 환경영향에 대한 제3자 평가 및 인증 (우수제품 선별)	제품의 환경성 정보제공을 위한 자기선언 주장	제품의 환경성결과를 계량적으로 산출 및 표시
표준	ISO 14024	ISO 14021	ISO 14025
정보제공 방식	로고 / 간단한 설명	로고 / 문구	로고 / 데이터시트 / 그래프
적용 범위	부분적 전과정	특정 환경 측면	전과정
환경측면 고려범위	다중 속성	단일 속성	다중 속성
인증여부	제3자 인증 필수	자기 선언 (일반적으로 비인증)	제3자 인증 필수
국내제도	환경표지제도	-	환경성적표지제도
인증도안			
관련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

■ 환경라벨링

환경라벨링은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결과 우수한 제품임을 소비자가 식별·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지속가능 생산의 노력과 소비자의 지속가능 소비를 연결해주는 핵심 정책수단이며, 소비자에게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제3자 인증여부와 라벨의 부여기준에 따라 유형을 제1, 2, 3유형(Type I, II, III)으로 분류한다.



본 제도는 소비자에게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친환경제품 구매를 유도하여 시장주도의 지속가능 소비·생산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기반은 존재하나 법적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임의제도이다. 유사한 국내제도로 저공해자동차인증(환경부), 친환경농산물인증(농림수산물식품부)가 있다.

< 국내 인증제도 >

구분	법적 강제인증	법정 임의인증	민간인증
개요	법적기반 존재 / 강제 인증	법적기반 존재 / 자발적 인증	법적기반 없음 / 자발적 인증
품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수가 'KC'마크 계량기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KS표시(KS마크) 우수재활용제품(GR마크) 부품소재 신뢰성인증(R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Q마크(6개*시험연구원) '건'마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옴스상품인증(한국표준협회)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작자동차배출가스 환경측정기기 주택성능등급표시 에너지효율등급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저공해자동차 친환경농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HB마크(공기청정협회) LOHAS마크(한국표준협회) Welbix인증(연세대 KSAC) Well-being인증(능률협회인증원)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산품/전기용품안전인 전자파장해검정(EMC) 가스용품안전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용기계기구 산업용 기계설비 S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S마크(화학시험연구원) CA마크(공기청정협회) ST마크(완구협회)
보건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제품GH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균마크(의류시험연구원) HS마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우수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e-Trust(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전기전자제품류), 한국화학시험연구원(화학제품류),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생활용품류),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기계, 유화제품류), FITI시험연구원(원사직물제품류), 한국의료시험연구원(의료제품류)

본 제도는 2001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근거로 시행되었으며,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단, 소비자에게 혼돈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은 제외될 수 있음).

■ 환경성적표시제도 주요 추진경과

구분	추진경과
2000.08.	환경성적표시제도 법적근거 마련
2001.02.	환경성적표시제도 시행
2001.04.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 교육기관 지정(환경보전협회)
2009.02.	탄소성적표지(탄소배출량)제도 시행
2011.11.	저탄소제품인증 시행
2012.12.	환경성적표지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 도입
2016.07.	환경성적표시제도와 탄소성적표시제도 통합
2017.01.	환경성적표지 신규 통합로고 시행
2017.04.	물발자국 시범사업 추진
2017.11.	물발자국 인증 시작
2020.07.	녹색제품 내 저탄소제품 포함

본 제도 운영이후 환경성적표지 인증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2년 12월 기준으로 누적 5,733개(환경성적: 2,353개, 탄소발자국: 2,306개, 저탄소제품: 1,064개)의 제품이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도별 인증 건수는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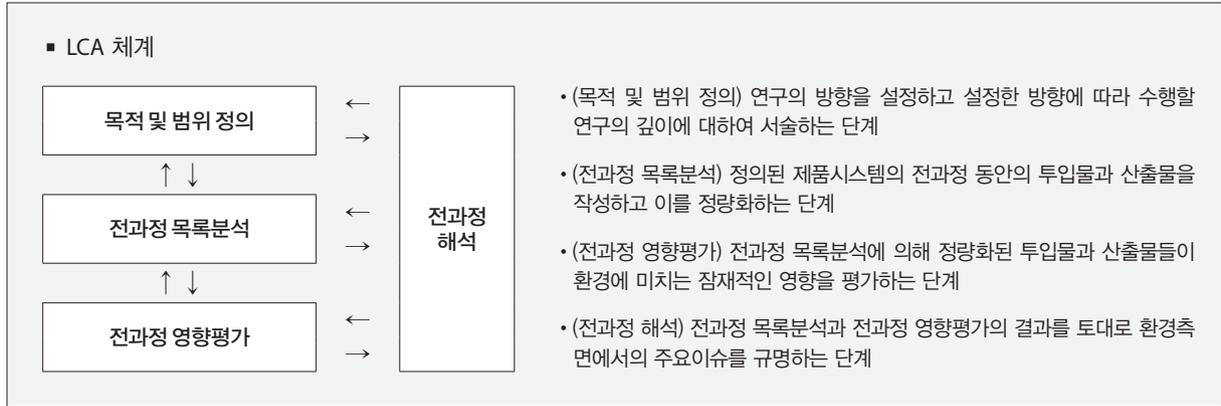
< 연도별 인증 건수(개) ('23년 제1차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2023.0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환경성적	368	815	1,003	1,303
저탄소제품	139	177	294	492
신청현황	499	735	829	871

2. 방법론

환경성 정보는 제품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평가 도구인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를 통해 도출되어야 하며, 그 결과 환경성 정보로 제공되어야 한다. 전과정평가는 제품 전과정(원료채취(취득), 원료가공, 부품생산, 사용, 재활용 및 최종 폐기)에 걸쳐 제품 시스템의 투입물, 산출물 그리고 제품 시스템의 잠재적 환경영향을 집계하고 평가하는 기법이다(ISO 14040, 14044). 전과

정평가는 목적 및 범위정의(Goal and Scope Definition), 전과정 목록분석(Life Cycle Inventory Analysis, LCI), 전과정 영향평가(Life Cycle Impact Assessment, LCIA), 전과정해석(Life Cycle Interpretation) 등의 4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전과정평가는 평가 목적에 따라 연구수행의 수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환경성적표지는 제도운영을 위한 방법론의 일관성 유지, 동일 제품군간 비교 등을 위하여 가치판단이 필요한 사항(평가 기준, 데이터 수집기준, 방법, 할당규칙 등)들에 대한 규칙을 제공한 간략화(Simplified) 수준의 LCA로 볼 수 있다.

< 전과정평가 수준 및 개요 >

구분	Simplified LCA		Detailed LCA
일반적 목적	단기분석, 개괄적 환경성 검토	-	제품개발(개선), 대외 정보(연구)공개
	ex) 환경성적표지	-	ex) 지속가능보고서 정보공개
주요결과 및 활용	제품당 환경성 수치	제품시스템별 환경성 분석	제품시스템간 환경성 비교
	인증정보 활용	제품개발(개선), 대외공개 및 국제인증 등	제품 정책·전략 (국가 또는 산업단위)
시스템 설계	단일 공정(필요시 세분)	주요 공정별 및 협력사 공정 포함	他제품 시스템 포함
데이터 수집	사업장 데이터 중심	사업장 및 협력사	他제품 사업장 포함
결과검증	인증심사	대외공개 시 3자 검증	

3. 주요내용

3.1 운영체계

환경성적표지제도는 환경부가 총괄운영을 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대상제품 선정, 작성지침 개발 등의 업무수탁 기관 및 인증기관)과 환경보전협회(인증심사원 교육기관)가 세부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 운영체계 >



3.2 인증신청 및 접수

환경성적표지 인증의 인증 형태는 최초제품인증, 파생제품인증, 동일인증, 갱신인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업에서 인증을 신청한 제품을 최초제품으로 설정하고, 제품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파생제품 및 동일제품으로 인증신청이 가능하다.

< 인증대상 및 형태 >

구분	정의
파생제품인증	최초 제품과 비교하여 동일한 주요 기능을 수행하며 포장재를 제외한 성분·재질·비율이 경미하게 다른 제품
동일인증	인증제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환경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재질·비율 등이 같아 제품 전과정에서의 환경성적이 동일한 제품
갱신인증	인증기간이 종료되기 전 인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인증기간 동안에 제품의 생산 공정이나 성분·재질·비율 등의 일부가 변경된 제품에 대하여 환경성적을 확인하여 인증하는 것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제출한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인증승인일까지 90일내에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보완 또는 수정이 요구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환경성적표지 인증 절차 >



■ 인증수수료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인증심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비목	산정내역
기본수수료	제품당 5만원
인증심사비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의 '산업공장-고급기술자*'의 노임단가 × 심사일수(서류 및 현장심사 포함) (22년 기준(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329호(2021.12.06.): 291,401원)
제경비	인증심사비의 110%
출장여비	인증기관의 여비 기준을 준용

■ 인증수수료 감면대상 및 기준

감면대상	감면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성적표지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참여한 기업 또는 기관 	인증신청수수료의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부의 국가 LCI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자사 데이터를 제공한 기업 또는 기관 	인증신청수수료의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누적 인증 제품 수가 50개 이상인 기업 또는 기관 그린카드 제도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기업 또는 기관 	인증신청수수료의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밖에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3 영향범주

본 제도의 환경성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기반으로 자원소모, 지구온난화, 산성화, 광화학적 산화물 생성, 수자원영향, 부영양화, 오존층영향까지 총 7개 영향범주에 대해서 산정하고 있다.

< 환경성적표지 환경 영향범주 >

영향범주	설명	커뮤니케이션	인증도안
자원소모	광물 및 화석연료 등의 개발 및 소비로 인한 전지구적 영향	자원발자국	
지구온난화	대기로 방출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물질이 지구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탄소발자국	
산성화	대기 중의 산성화물질(NOx, SOx)이 빗물에 녹아 지표로 떨어지면서 인간활동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산성비	

영향범주	설명	커뮤니케이션	인증도안
광화학적 산화물생성	인간 활동으로 발생된 활성 물질이 빛과 반응하여 생성된 지표면의 오염물질로 인한 인체 및 생태계 영향	광화학 스모그	
수자원영향	농업, 공업 등 인간 활동이 수질, 수량 등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물발자국	
부영양화	대기, 수계, 토양에 질소, 인 등 유기물질의 농도가 과다해짐에 따른 생태계 영향	부영양화	
오존층영향	대기중으로 배출된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이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	오존층영향	

3.4 저탄소제품

2011년 저탄소제품 인증을 시행하면서, 1단계 환경성적표지 인증과 2단계 저탄소제품 인증으로 구성되었다.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중 원료·연료 대체나 공정·효율개선 등을 통해 종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거나 저탄소 제품 인증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저탄소제품 인증을 부여한다.

저탄소제품 인증은 환경성 정보 중 탄소배출량 대비 탄소배출량 감축량이 최소탄소감축률 이상이거나, 제품 신청일의 이전 분기부터 과거 6년 이내 동종제품의 환경성적표지의 탄소배출량의 평균값보다 낮은 경우에 받을 수 있다.

< 환경성적표지제도 1단계 및 2단계 인증제도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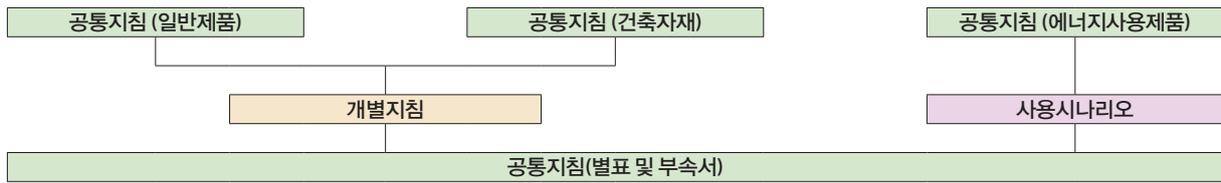
구분	1단계	2단계	
	환경성적표지 인증	저탄소제품 인증	
개요	인증기준에 따라 환경성적 산정 및 표시	환경성적표지의 탄소발자국 산정 결과가 최대허용탄소배출량 혹은 최소탄소감축률 기준보다 낮은 경우 저탄소제품으로 표시	
기준설정	-	최대허용탄소배출량 기준	탄소배출량 인증 동종제품의 평균 탄소배출량을 기초로 설정
		최소탄소감축률 기준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초로 설정(3.3%)

3.5 인증기준(작성지침)

작성지침은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혹은 기관이 제품에 대한 환경성적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이며, 공통지침, 개별지침, 사용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다. 작성지침을 통하여 동일한 성능을 수행하는 제품들이 작성지침을 통해 산출된 제

품의 환경성을 상호 비교할 수 있으며, 작성 지침 내에는 작성지침의 적용범위, 산정원칙, 제품 전과정 환경성적 계산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개별 제품군의 특성을 반영한 제품 환경성적 산정방법론들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제도는 14개의 개별 작성지침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부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제품별 개별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 작성지침 관계도 >



< 작성지침 정의 >

구분	정의
공통지침 (일반제품)	사용 단계의 환경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제품(에너지 비사용 내구재, 생산재, 서비스, 비내구재, 물 사용제품)에 대하여 환경성적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공통지침 (에너지사용제품)	사용 단계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성적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공통지침 (건축자재)	건축자재 제품에 대하여 환경성적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사용시나리오	에너지사용제품 및 물 사용제품 사용 단계에서의 환경성적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 중 공통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
제품군별 작성지침 (개별지침)	일반제품 또는 에너지사용제품 중 환경성적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별도로 정한 제품의 환경성적을 산정하기 위한 개별지침

작성지침에 따라 제품 유형별 시스템 경계가 정의되며, 시스템 경계에 따라 수집이 필요한 데이터의 범주의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 사용 내구재인 경우 제조전 단계 데이터 수집 시 1차 협력업체의 제조공정 데이터를 미수집하며, 원료 및 부품의 재질 정보만을 수집한다.

< 제품 별 시스템 경계 >

구분	제조전 단계			제조 단계		사용 단계	폐기 단계
	원료물질 채취 및 제조공정	협력업체 제조공정	수송 (협력업체 → 제조사업장)	제품 제조 공정	유통 (제조사업장 → 소비자)		
생산재	●	●	●	●			
서비스	●	●	●	●			
비내구재	●	●	●	●	●		●
에너지 비사용 내구재	●	●	●	●	●		●
물 사용 제품	●	●	●	●	●	●	●
에너지 사용 내구재	●		●	●	●	●	●

■ 수집 데이터

전과정 단계		구분	수집 데이터
제조 전 단계	원료물질 채취 및 제조과정	투입물	• 재질
	협력업체 제조과정	투입물	• 연간 물질사용량 • 연간 용수사용량 (취수원 수역) • 물질명 및 대표 재질
		산출물	• 연간 에너지원 및 에너지소비량 ↳ 스팀: 투입 및 산출 열량(MJ) • 연간 제품 및 부산물 생산량
	수송 (협력업체 → 제조사업장)		• 원료물질 입고비용 • 업체명 및 주소
제조 단계	제품 제조 공정	투입물	• 연간 물질사용량 • 연간 용수사용량 (취수원 수역) • 물질명 및 대표 재질
		산출물	• 연간 에너지원 및 에너지소비량 ↳ 스팀: 투입 및 산출 열량(MJ) • 연간 제품 및 부산물 생산량
	유통 (제조사업장 → 소비자)		• 권역별 판매량(8대 권역)
	사용 단계		• 제품 사용 시나리오 • 환경성적표지 제품군별 작성지침
폐기 단계		• 제품 ·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제품 ·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전국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3.6 환경성적 산정

제품 환경성적 산정은 전과정 목록분석(LCI) 결과를 특정 환경 영향범주 및 범주지표들과 연관시켜 잠재적 환경 영향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LCA 연구에서의 영향평가(LCIA) 단계를 수행한 결과와 동일하다. 환경성적 산정 시에는 공통지침 및 개별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본 제도에서는 제도운영의 효율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환경성적 산정 시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통합하여 평가계수(기준단위(원료 1kg 생산, 연료 1L 생산, 폐기물 1kg 처리 등)당 환경영향을 수치화)로 제공하고 있으며, 환경성적은 수집된 원료·보조물질, 에너지, 배출물(대기, 수계, 토양) 및 폐기물(매립, 소각)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공되는 평가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공정별로 수집된 투입·산출물에 평가계수를 곱하고, 이를 영향범주별로 합산하여 제품의 환경성적을 산출한다.

$$\text{환경성적} = \sum(\text{투입} \cdot \text{산출물}_{i,j} \times \text{평가계수})$$

여기서, i: 원료·보조물질, 에너지, 배출물 및 폐기물, j: 전과정 단계

< 전과정 목록분석 수행 단계와 평가계수의 관계 >



LCI DB를 활용하여 도출된 영향범주별 평가계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공고하고 있으며, 필요한 평가계수가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일반데이터(국의 LCI DB, 문헌 등)를 활용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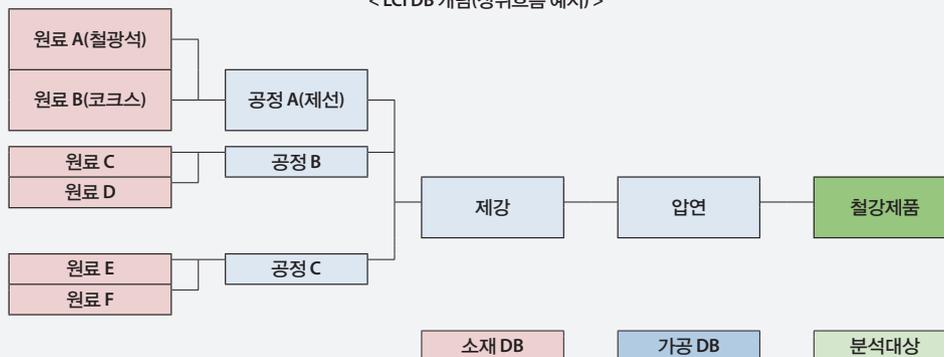
< 평가계수(예) >

구분	단위	자원발자국 (kgSbeq.)	탄소발자국 (kgCO ₂ eq.)	오존층영향 (kgCFC11eq.)	산성비 (kgSO ₂ eq.)	부영양화 (kgPO ₄ ³⁻ eq.)	광화학스모그 (kgC ₂ H ₄ eq.)	물소모계수 (m ³ H ₂ Oeq.)
1종 포틀랜드 시멘트	kg	2.40E-03	9.26E-01	1.19E-08	7.24E-04	1.15E-04	7.21E-05	7.70E-04
모래	kg	4.98E-06	2.21E-03	1.26E-10	6.29E-06	1.10E-06	1.17E-06	9.77E-07
전기	kWh	3.13E-03	4.95E-01	1.37E-11	8.37E-04	1.56E-04	3.53E-06	6.17E-03
혼합폐플라스틱 조각	kg	5.40E-03	3.41E+00	7.56E-08	2.74E-03	8.40E-04	4.80E-04	6.63E-04

■ LCI DB(Life Cycle Inventory DB)의 개념

- 제품 기능단위당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까지의 제품 시스템으로 투입되는 양과 산출되는 양을 목록화한 데이터로 대한 전과정평가를 수행하는 기초데이터로 활용
 - LCA는 연구 및 목적정의, 전과정 목록분석, 전과정영향평가, 해석의 4단계로 구성, 전과정 목록분석에서 투입·산출되는 물질목록(LCI DB)이 도출
 - 제품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상·하위 흐름에 대한 DB를 구축, 제품(생산)을 중심으로 투입·산출물과 연결
- * 따라서, 국가 LCI DB 보유수와 DB의 품질(최신성, 대표성, 정확성 등)이 전과정평가 결과의 신뢰성에 주요한 요인

< LCI DB 개념(상위흐름 예시) >



3.7 인증혜택

본 인증 취득시 다양한 인증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녹색건축 인증 시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 가점 혜택을 부여한다. 이 외에도 인증제품은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되는 등 인증제품의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본 제도의 활성화 및 기업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제경비 면제(연매출 1,000억 원 이하), 환경성적 산정 지원, 인증도안 사용 지원(금형 제작비용), 제도 관련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환경성적표지 인증 혜택 >

혜택	구분	내용	관련법률
가점 부여	녹색건축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성선언 제품 사용 개수에 따라 최대 4점 가점 부여 • 저탄소 자재 사용 개수에 따라 최대 2점 부여 • 전체 건축공사 자재비 대비 녹색건축자재 적용 비용의 비율에 따라 최대 4점 부여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업 선정 시 환경성적표지 인증기업 1점 가점 	
	녹색기업 지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점 가산점 부여 	
의무구매 및 사용	녹색제품 판매품목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제품 인증 제품의 녹색제품 판매품목 인정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녹색제품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제품’으로 반영 하여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녹색제품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탄소제품’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으로 반영하여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의무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로 의무 사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타	심사정보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 종합낙찰제 선정평가 시 환경평가 심사항목으로 탄소배출량 정보 활용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카드 제도와 연계하여 인증제품 소비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에코머니) 제공 및 홍보활동 전개 • 대중매체(TV, 신문 등), 전시회, 뉴스레터 및 설명회 등을 통한 인증제품 홍보 	

■ 지원 프로그램

- 중소기업 대상으로 환경성적 산정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면서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이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신청 수수료의 제경비 면제
- 중소기업 대상 환경성적표지 인증도안 사용 지원(도안 금형 제작비용 지원)
- 환경성적표지 제도 전용 시스템(ezEPD) 지원 및 관련 교육 실시
-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실시
- 환경성적표지 제도 설명회 및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실시

4. 맺음말

환경성적표지제도는 제품의 환경성적을 소비자(B2C) 혹은 구매기업(B2B)에게 제공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20여년간 운영하면서 제품의 환경성을 입증하고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환경부의 노력으로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 측면에서도 인증제도가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다만, 유럽에서 추진 중인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의 도입이 가시화되고, 글로벌 수준에서 통용되는 다양한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국내 제도와 타 제도간 방법론적 일치성, 결과에 대한 상호 인정 등 극복해야할 요소들이 존재한다.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별제품에 대한 작성지침 개발, LCI DB의 제정 및 개정, 방법론적 개선방안 모색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대외 홍보, 추가적인 기업 혜택 발굴 등 좀 더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성적표지제도가 이러한 대응 및 활동을 통하여 기업, 기관 및 소비자들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고,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며,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담당 편집위원 : 김낙현(그리너스)

●● 학회 특별회원사 동정 안내

Magazine of RCR(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지)은 계간으로 발행되어 회원을 비롯한 관련 업계, 학계,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특별회원사의 최신 정보 및 기술현황 등의 홍보사항을 학회지에 무료로 게재하여 널리 홍보하고자 하니 관심 있는 특별회원사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원고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특별회원사 홍보내용

특허, 신기술, 신제품, 수상실적, 세미나 및 시연회, 사회공헌 등

2. 원고 분량

A4 2~4매 내외이나 특별한 제한이 없음(그림 또는 사진 포함 가능)

3. 보내실 곳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오경숙 국장(E-mail : rcr@rcr.or.kr, Tel. : 02-552-4728)